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619호 2024. 4. 8.(월요일)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24-52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1
- 하동군 고시 제2024-53호 하동군 빈집 실태조사 조사계획 고시 2
- 하동군 고시 제2024-55호 공유수면 점용 허가 고시 3
- 하동군 고시 제2024-58호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4
- 하동군 고시 제2024-59호 2024년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사방지 지정고시 10
- 하동군 고시 제2024-60호 지적기준점 성과 (변경)고시 13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24-578호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6
- 하동군 공고 제2024-579호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41

일반공고

- 하동군 공고 제2024-553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변경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106
- 하동군 공고 제2024-571호 진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공시 송달 공고 114
- 하동군 공고 제2024-603호 2024년 하동군 군정혁신 정책제안 공모 116

회 람									
--------	--	--	--	--	--	--	--	--	--

발행 : 하동군 편집 : 기획예산과 (055)880-2041, 행정2041

하동군 고시 제2024 - 52호

도로명주소 부여 · 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3. 28.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숙재2길 15-10 외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4건)				

○ 도로명주소 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경제산업로 332-37 외 46건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폐지사유	비고
별 지 참 조(47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4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4. 3. 2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하동군 고시 제2024-53호

하동군 빈집 실태조사 조사계획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빈집실태조사)에 따라 하동군 관내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시행 전 이를 고시합니다.

2024. 3. 29.

하 동 군 수

- 추진근거: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빈집실태조사)
- 사업목적: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의 실태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동군 관내 빈집의 정비계획 수립 및 지속관리체계 마련
- 조사개요
 - 조사기관: 한국부동산원
 - 조사기간: 2024. 4. ~ 2024. 12.(9개월) ※사업 기간은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 조사대상: 하동군 관내 추정 빈집 1,361호
 - 조사내용
 - 빈집 여부 확인
 - 소유자 의견조사 (방치 사유 등)
 - 등급산정 조사 (위해수준 등)
 - 그 밖에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에 포함되는 사항 등
- 빈집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하동군청 건축과 (☎055-880-213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하동군 고시 제2024-55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 3. 28.

하 동 군 수

- 허가일 : 2024. 3. 29.
- 점·사용 목적 :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댐 사업
- 점·사용 장소 : 경남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1749-3(인근: 묵계리 217)
- 점·사용 면적 : 424㎡
- 점·사용의 기간 : 2024. 3. 29. ~ 영구
-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함양국유림관리소

하동군 고시 제2024-58호

지적기준점성과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기준점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4. 1.

하 동 군 수

기준점		지적위성좌표/ 지적좌표		원점	평면좌표		표고	소재지	설치일 (관측일)	표지 재질	비 고
명칭	번호	위도	경도		X	Y					
지적도근 점	W102 89	35-14- 02.591 6	127-3 8-25.9 863	중부	29324 9.42	25830 8.21	111.47 4	화개면 용강리 319	2024.03. 04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2 90	35-14- 00.693 7	127-3 8-27.0 287	중부	29319 1.11	25833 4.95	104.89 3	화개면 용강리 1351	2024.03. 04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2 91	35-13- 59.043 9	127-3 8-27.2 345	중부	29314 0.30	25834 0.48	99.641	화개면 용강리 1351	2024.03. 04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2 92	35-02- 25.759 8	127-5 0-25.0 800	중부	27190 9.58	27667 2.59	53.158	양보면 운암리 994-5	2024.03. 06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2 93	35-02- 26.970 2	127-5 0-29.2 236	중부	27194 7.77	27677 7.30	47.337	양보면 운암리 990	2024.03. 06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2 94	35-02- 30.770 9	127-5 0-34.1 339	중부	27206 5.95	27690 0.77	41.588	양보면 운암리 982-9	2024.03. 06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2 95	35-12- 06.016 3	127-4 2-49.3 122	중부	28970 2.12	26499 2.48	305.58 9	약양면 등촌리 산41-1	2024.03. 06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2 96	35-12- 04.410 2	127-4 2-48.5 818	중부	28965 2.49	26497 4.36	3013.1 75	악양면 등촌리 530	2024.03. 06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2 97	35-12- 02.718 1	127-4 2-48.4 240	중부	28960 0.31	26497 0.74	291.57 7	악양면 등촌리 529	2024.03. 06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2 98	35-12- 03.705 9	127-4 2-51.1 235	중부	28963 1.25	26503 8.81	287.48 4	악양면 등촌리 545-1	2024.03. 06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2 99	35-12- 05.301 8	127-4 2-50.4 944	중부	28968 0.32	26502 2.54	285.61 9	악양면 등촌리 545-1	2024.03. 06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 00	35-08- 21.680 4	127-4 2-17.0 714	중부	28278 2.61	26422 5.90	74.669	악양면 축지리 193	2024.03. 06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 01	35-08- 20.919 6	127-4 2-20.3 342	중부	28275 9.75	26430 8.66	76.236	악양면 축지리 230	2024.03. 06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 02	35-08- 21.999 6	127-4 2-21.5 079	중부	28279 3.24	26433 8.14	78.983	악양면 축지리 산95	2024.03. 06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 03	35-06- 32.373 3	127-4 4-33.8 715	중부	27943 9.12	26771 4.18	171.99 7	적량면 우계리 산381-1	2024.03. 06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 04	35-06- 30.413 0	127-4 4-39.4 133	중부	27937 9.76	26785 4.98	159.19 9	적량면 우계리 산379-2	2024.03. 06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 05	35-04- 15.957 7	127-4 6-00.7 904	중부	27525 1.72	26994 7.74	51.491	적량면 동산리 산227-1	2024.03. 07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 06	35-04- 15.294 7	127-4 6-03.6 732	중부	27523 1.85	27002 0.94	53.846	적량면 동산리 산231-8	2024.03. 07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 07	35-04- 12.744 6	127-4 6-05.9 702	중부	27515 3.71	27007 9.75	56.058	적량면 동산리 산212-1	2024.03. 07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 08	35-10- 20.091 0	127-4 2-13.6 582	중부	28643 1.22	26411 3.68	167.34 7	악양면 정서리 산63-2	2024.03. 07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W103	35-10-	127-4	중부	28637	26405	180.01	악양면 정서리 738	2024.03.	철재	세계측

점	09	18.397 2	2-11.3 495		8.61	5.63	4			07		지계
지적도근 점	W103 10	35-10- 18.874 0	127-4 2-13.4 989	중부	28639 3.69	26410 9.92	160.09 0		악양면 정서리 803	2024.03. 07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 11	35-10- 17.184 4	127-4 2-18.0 181	중부	28634 2.43	26422 4.64	123.71 6		악양면 정서리 산58	2024.03. 07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 12	35-10- 16.743 7	127-4 2-19.8 204	중부	28632 9.17	26427 0.35	111.24 5		악양면 정서리 산58	2024.03. 07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 13	35-10- 07.104 6	127-5 6-10.8 140	중부	28620 5.67	28530 2.06	55.119		옥종면 북방리 889-2	2024.03. 07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 14	35-12- 39.453 6	127-4 5-56.2 743	중부	29076 7.82	26971 3.97	267.31 6		청암면 목계리 107-3	2024.03. 05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 15	35-12- 41.226 8	127-4 5-53.1 734	중부	29082 1.86	26963 5.11	272.88 8		청암면 목계리 102-6	2024.03. 05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 16	35-12- 41.073 3	127-4 6-03.4 663	중부	29081 9.14	26989 5.49	308.59 0		청암면 목계리 산14	2024.03. 05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 17	35-09- 39.868 2	127-4 2-16.5 264	중부	28519 2.13	26419 5.04	74.413		악양면 정서리 1063	2024.03. 08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 18	35-09- 38.483 4	127-4 2-15.6 044	중부	28514 9.29	26417 2.01	75.499		악양면 정서리 364	2024.03. 08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 19	35-09- 35.670 0	127-4 2-17.6 832	중부	28506 2.96	26422 5.24	65.763		악양면 정서리 501	2024.03. 08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 20	35-12- 12.003 7	127-3 7-57.8 219	중부	28983 6.70	25761 7.76	49.966		화개면 탑리 235	2024.03. 08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 21	35-12- 08.352 5	127-3 7-58.3 253	중부	28972 4.26	25763 1.21	36.149		화개면 탑리 851	2024.03. 08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 22	35-12- 08.556	127-3 7-56.2	중부	28973 0.22	25757 9.58	28.636		화개면 탑리 209	2024.03. 08	철재	세계측 지계

		6	859									
지적도근 점	W103 23	35-12- 06.671 6	127-3 7-59.4 293	중부	28967 2.63	25765 9.46	41.385	화개면 탑리 851	2024.03. 08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 24	35-12- 45.486 7	127-4 6-37.6 713	중부	29096 1.88	27075 9.58	455.42 2	청암면 상이리 산7-1	2024.03. 08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 25	35-12- 47.456 2	127-4 6-40.2 591	중부	29102 3.09	27082 4.56	456.29 1	청암면 상이리 산16	2024.03. 08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 26	35-12- 42.787 3	127-4 6-37.8 326	중부	29087 8.72	27076 4.31	449.91 3	청암면 상이리 산16	2024.03. 08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 27	35-12- 35.067 9	127-4 6-22.9 487	중부	29063 7.88	27038 9.70	437.17 7	청암면 상이리 산15	2024.03. 08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 28	35-12- 32.725 3	127-4 6-22.1 306	중부	29056 5.52	27036 9.57	430.17 9	청암면 상이리 산15	2024.03. 08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 29	35-12- 33.377 2	127-4 6-20.9 578	중부	29058 5.38	27033 9.75	426.18 9	청암면 상이리 산15	2024.03. 08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 30	35-10- 00.723 6	127-5 6-14.9 645	중부	28601 0.00	28540 8.95	55.197	옥종면 북방리 888-1	2024.03. 07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 31	35-08- 44.799 1	127-4 4-42.0 174	중부	28352 1.81	26788 9.94	464.20 6	적량면 서리 산138-4	2024.03. 12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 32	35-08- 46.062 9	127-4 4-43.9 534	중부	28356 1.13	26793 8.66	456.00 5	적량면 서리 산138-4	2024.03. 12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 33	35-08- 42.997 0	124-4 4-42.9 660	중부	28346 6.45	26791 4.37	428.03 5	적량면 서리 산138-4	2024.03. 12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 34	35-08- 42.584 1	127-4 4-41.0 651	중부	28345 3.37	26786 6.35	421.50 6	적량면 서리 산138-4	2024.03. 12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 35	35-08- 41.736 8	127-4 4-44.2 781	중부	28342 7.87	26794 7.87	404.35 3	적량면 서리 산138-4	2024.03. 12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 36	35-08- 39.389 4	127-4 4-47.8 424	중부	28335 6.20	26803 8.64	384.13 0	적량면 서리 산138-4	2024.03. 12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 37	35-08- 38.843 8	127-4 4-50.5 519	중부	28333 9.90	26810 7.36	369.32 9	적량면 서리 822	2024.03. 12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 38	35-08- 39.558 2	127-4 4-53.3 461	중부	28336 2.45	26817 7.92	364.06 7	적량면 서리 산138-1	2024.03. 12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 39	35-02- 13.949 1	127-4 7-28.5 062	중부	27150 9.01	27220 0.00	8.480	고전면 신월리 508-2	2024.03. 18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 40	35-02- 10.074 7	127-4 7-32.3 957	중부	27139 0.39	27229 9.53	12.773	고전면 신월리 478-4	2024.03. 18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 41	35-10- 08.008 1	127-3 8-44.5 679	중부	28602 2.95	25882 5.03	21.912	화개면 부춘리 1213	2024.03. 19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 42	35-07- 03.668 5	127-4 2-41.0 408	중부	28038 2.73	26484 9.87	182.48 4	하동읍 흥릉리 487-5	2024.03. 19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 43	35-04- 39.639 8	127-4 9-15.2 208	중부	27602 0.78	27486 7.96	103.85 2	양보면 감당리 1016-2	2024.03. 20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 44	35-04- 41.020 0	127-4 9-16.7 198	중부	27606 3.63	27490 5.59	103.21 2	양보면 감당리 1184	2024.03. 20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 45	35-04- 40.929 4	127-4 9-17.8 769	중부	27606 1.08	27493 4.93	100.39 1	양보면 감당리 1019-3	2024.03. 20	맨홀식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 46	34-57- 02.612 6	127-5 2-55.9 767	중부	26198 3.82	28058 5.21	2.628	금남면 노량리 334-16	2024.03. 20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 47	34-56- 58.515 8	127-5 2-55.1 618	중부	26185 7.38	28056 5.65	2.827	금남면 노량리 334-20	2024.03. 20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 48	35-14- 12.584 8	127-3 8-16.7 988	중부	29355 5.91	25807 3.92	169.45 8	화개면 용강리 산96-1	2024.03. 21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W103	35-14-	127-3	중부	29354	25811	163.49	화개면 용강리 산96-1	2024.03.	철재	세계측

점	49	12.269 8	8-18.2 699		6.44	1.18	6			21		지계
지적도근 점	W103 50	35-14- 10.325 8	127-3 8-18.0 724	중부	29348 6.50	25810 6.57	161.57 1	화개면 용강리 291	2024.03. 21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 51	35-06- 42.586 7	127-4 6-57.2 453	중부	27978 1.68	27134 2.64	100.14 6	적량면 동리 1431	2024.03. 21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 52	35-06- 41.358 2	127-4 6-58.2 261	중부	27974 4.02	27136 7.77	91.286	적량면 동리 1431	2024.03. 21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 53	35-06- 39.236 8	127-4 6-57.7 841	중부	27967 8.55	27135 7.10	86.282	적량면 동리 56-2	2024.03. 21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 54	35-11- 16.533 5	127-3 9-54.5 392	중부	28814 6.47	26058 1.62	460.27 0	화개면 부춘리 125	2024.03.2 2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 55	35-11- 13.666 3	127-3 9-54.0 471	중부	28805 8.02	26056 9.76	449.66 3	화개면 부춘리 산40	2024.03.2 2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 56	35-11- 13.507 1	127-3 9-50.6 757	중부	28805 2.55	26048 4.49	437.97 7	화개면 부춘리 산41-6	2024.03.2 2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 57	35-09. 52.105 2	127-3 9-56.5 738	중부	28554 4.86	26065 0.51	150.96 7	화개면 부춘리 731-2	2024.03.2 7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 58	35-09- 53.834 6	127-3 9-58.8 636	중부	28559 8.55	26070 8.10	154.64 7	화개면 부춘리 1167	2024.03.2 7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3 59	35-09- 54.079 3	127-4 0-00.2 849	중부	28560 6.33	26074 4.02	154.77 4	화개면 부춘리 산204-7	2024.03.2 7	철재	세계측 지계	

★ 측량성과 보관장소 : 하동군청 민원과

하동군 고시 제 2024 - 59호

사방지 지정 고시

[산림유역관리사업(적량서지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경상남도 사방지 관리규정」 제2조 제3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규정에 의거 2024년 산림유역관리사업(적량서지구)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 하고, 이에따른 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 4. 1.

하 동 군 수

1. 사방지 지정내역 : 붙임참고
2. 지정 사유 : 2024년 사방사업[산림유역관리사업(적량서지구)] 시행지
3. 지정사업의 종류 : 사방댐, 계류보전, 산지사방
4. 행위제한 :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토석·나무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의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는 관할청에 허가를 받아야 함.
5. 사방지 지정고시 관련 도면 열람 및 문의사항은 하동군청 산림과 산림정책담당(☎055-880-246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사방지 지정 조서 및 내역 1부.
2. 사방지 지정 도면 1부. 끝.

사방지 지정 조서

2024년산림유역관리사업(하동적량서지구)

토 지 소유자	성 명	이*자 오		
	주 소	경상*도 하*군 적*면 *리 6*0-1 외		
토 지 소 재 지		하동군 적량면 서리 1765 외		
조 사 년 월 일		2024년 2월 일		
사업계획 승인 년월일		2024년 2월 일		
사방지 지정 면적	당초	9,517	m	변경
사방지 지정 사유	2024년도 사방사업 시행 지역에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및 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정함.			

조사자 직급: 지방녹지주사

성 명 : 최민경 (인)

사방지 지정 내역

토지소재지				지 목	지적 (㎡)	지정 면적 (㎡)	변경 지정 면적 (㎡)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주소	성명	
계			15개 필지		85,919	9,517	-			
하동	적량	서	885	답	727	86		창*시 가*동 2*~4 한국센*얼아파트 .에어-1*4	김*태	
하동	적량	서	886	임	800	136		경상*도 하*군 적*면 *리 6*0-1	이*자	
하동	적량	서	887	답	570	233		경상*도 하*군 적*면 *리 6*0-1	이*자	
하동	적량	서	895-1	답	1,091	255		경상*도 양*시 삼*로 *6, 1*1동 12*2호	전*호	
하동	적량	서	1795	구 거	2,783	64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 통부)	
하동	적량	서	896	답	139	46		경상*도 하*군 적*면 *리 6*0-1	이*자	
하동	적량	서	897	답	268	153		하동군	하동군	
하동	적량	서	888-1	답	1,031	144		경상*도 마*시 회*동 3*-7* -3*1호	김*태	
하동	적량	서	888-2	임	274	101		경상*도 마*시 회*동 3*-7* -3*1호	김*태	
하동	적량	서	912-3	답	1,838	332		경상*도 창*시 성*구 원**로8*8번길9, 1*4동9*2호	김*애 외 1	
하동	적량	서	908-2	임	258	24		경상*도 창*시 성*구 원**로8*8번길9, 1*4동9*2호	김*애 외 1	
하동	적량	서	908-1	답	1,302	33		경상*도 창*시 성*구 원**로8*8번길9, 1*4동9*2호	김*애 외 1	
하동	적량	서	586-2	임	522	44		부***시 부**구 성**로4*번길 3*	김*향	
하동	적량	서	584-10	답	2,327	211		경상*도 하*군 적*면 삼**로 7*9	정*주	
하동	적량	서	1765	천	71,989	7,655		국(환경부)	국(환경부)	

하동군 고시 제2024-60호

지적기준점성과 (변경)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기준점성과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 4. 1.

하 동 군 수

기준점		지적위성좌표/ 지적좌표	원점	평면좌표		표고	소재지	설치일 (관측일)	표지 재질	비 고		
명칭	번호			위도	경도						X	Y
지적도 근점	W5426	변경 전	중부	35-07- 20.733 1	127-43 -24.50 50	280916.5 61	204.438	265946.6 60	하동군 화개면 탐리 산25	2019-09- 06	철재	세계측 지계
		변경 후		35-12- 03.931 7	127-38 -31.83 84	289593.4 52						
지적도 근점	W5427	변경 전	중부	35-07- 21.314 7	127-43 -22.91 01	280934.1 94	187.705	265906.1 45	하동군 화개면 탐리 113	2019-09- 06	철재	세계측 지계
		변경 후		35-12- 05.020 6	127-38 -29.98 81	289626.7 07						
지적도 근점	W5428	변경 전	중부	35-07- 21.921 1	127-43 -20.01 08	280952.3 46	181.578	265832.5 99	하동군 화개면 탐리 854	2019-09- 06	맨홀식	세계측 지계

		변경후	35-12-06.6128	127-38-29.3709		289675.676	258416.874					
지적도 근점	W5429	변경전	35-07-22.9304	127-43-18.5203	중부	280983.179	265794.632	185.507	하동군 화개면 탐리 122-13	2019-09-06	철재	세계측 지계
		변경후	35-12-07.6893	127-38-30.9763		289709.113	258457.270					
지적도 근점	W5430	변경전	35-07-23.0471	127-43-17.2269	중부	280986.539	265761.856	172.693	하동군 화개면 탐리 854	2019-09-06	철재	세계측 지계
		변경후	35-12-09.8892	127-38-29.3964		289776.652	258416.868					
지적도 근점	W5431	변경전	35-07-22.7640	127-43-13.7569	중부	280977.178	265674.059	155.318	하동군 화개면 탐리 284-3	2019-09-06	철재	세계측 지계
		변경후	35-12-11.2098	127-38-26.1414		289816.820	258334.268					
지적도 근점	W5432	변경전	35-07-21.6306	127-43-13.3961	중부	280942.181	265665.176	145.274	하동군 화개면 탐리 284-3	2019-09-06	철재	세계측 지계
		변경후	35-12-09.9930	127-38-23.6019		289778.907	258270.272					
지적도 근점	W5433	변경전	35-07-20.2119	127-43-12.3236	중부	280898.263	265638.335	138.035	하동군 화개면 탐리 284-3	2019-09-06	철재	세계측 지계
		변경후	35-12-10.7530	127-38-21.6920		289802.018	258221.808					
지적도 근점	W5434	변경전	35-07-21.2850	127-43-11.4344	중부	280931.171	265615.579	129.032	하동군 화개면 탐리 284-3	2019-09-06	철재	세계측 지계
		변경후	35-12-11.2562	127-38-19.6841		289817.201	258170.917					
지적도	W5435	변경전	35-07-	127-43-	중부	280868.0	265585.9	117.226	하동군 화개면 탐리 284-3	2019-09-	철재	세계측

근점			19.244 0	-10.24 47		54	12						
	변경 후		35-12- 11.141 0	127-38 -16.51 26		289813.1 35	258090.7 15			06			지계
지적도 근점	W5436	변경 전	35-07- 18.781 7	127-43 -06.39 92	중부	280853.1 04	265488.6 42	107.966	하동군 화개면 탐리 253-1	2019-09- 06	철재	세계측 지계	
		변경 후	35-12- 11.343 3	127-38 -14.03 53		289818.9 68	258028.0 11						
지적도 근점	W5437	변경 전	35-07- 15.356 2	127-42 -55.13 47	중부	280745.4 83	265204.1 75	101.043	하동군 화개면 탐리 253-1	2019-09- 06	철재	세계측 지계	
		변경 후	35-12- 10.816 8	127-38 -11.80 85		289802.3 80	257971.7 87						
지적도 근점	W5438	변경 전	35-07- 08.557 0	127-42 -51.80 64	중부	280535.3 37	265121.4 01	89.831	하동군 화개면 탐리 253-1	2019-09- 06	철재	세계측 지계	
		변경 후	35-12- 11.500 6	127-38 -08.89 82		289822.9 81	257898.0 34						
지적도 근점	W5439	변경 전	35-07- 05.647 1	127-42 -48.22 58	중부	280445.0 11	265031.3 76	84.125	하동군 화개면 탐리 253-1	2019-09- 06	철재	세계측 지계	
		변경 후	35-12- 10.649 9	127-38 -07.32 75		289796.5 11	257858.4 70						
지적도 근점	W5440	변경 전	35-07- 04.011 2	127-42 -44.10 43	중부	280393.8 48	264927.3 74	69.740	하동군 화개면 탐리 227-6	2019-09- 06	철재	세계측 지계	
		변경 후	35-12- 09.550 8	127-38 -03.68 16		289762.0 50	257766.4 62						

★측량성과 보관장소 : 하동군청 민원과

하동군 공고 제2024-578호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년 4 월 2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2. 제안 이유

현행 조례가 상위 조례인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전면 개정하고, 투자유치 인센티브의 확대·개편 및 이종 지원에 관한 조항 신설 등 현행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 정비

- 기업투자촉진지구 신청 등 : 지정 해제 조항 신설(안 제3조)
- 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 한도금액 조정(안 제7조)
-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 상위 조례에 따른 신설(안 제15조)
- 서북부권역 등 균형발전대상지역 지원 : 상위 조례에 따른 신설(안 제17조)

조)

- 우선 지원에 대한 특례 : 상위 조례에 따른 신설(안 제18조)

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정비

- 국내기업 지원 규정 준용 : 상위 조례에 따른 신설(안 제23조)

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 정비

- 기금의 용도 : 부지매입비 용자금,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추가(안 제29조)

라. 하동군 투자유치 지원 체제 정비

- 위원회의 제척 등 :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해촉 조항 신설(안 제37조)

마.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 정비

- 기업의 의무 : 상위 조례에 따른 신설(안 제42조)
- 이중 지원에 관한 사항 : 중복지원 불가 및 예외 신설(안 제44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4년 4월 22일까지 하동군(참조 : 투자유치과, 전화 880-2645, FAX 880-2619, e-mail yuna86@korea.kr)에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 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현행 조례, 관련 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신설기업: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건물을 투자사업장의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나. 증설기업: 군내에서 기존 사업장의 건축 연면적을 증가시켜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2. “사업장”이란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다.

5.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9항에 따른다.

6.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7. “균형발전대상지역”이란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지역을 말한다.

8. “전략산업”이란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다.

9.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

나. 제조업 외의 경우 투자기업이 해당 사업장을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날

10.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1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12.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의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을 말한다.
13.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14. “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5. “문화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말한다.
16. “투자유치촉진지역”이란 최근 3년간 기업 투자유치 체결실적 및 보조금 지원을 등이 저조한 지역을 말한다.
17.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조제1호에 따라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제2장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

제3조(기업투자촉진지구 신청 등)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상남도 외(이하 “도외”라고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군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제32조에 따른 하동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투자유치촉진지역
3.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군수는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설비보조금 및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기업투자촉진지구의 분양이 완료된 경우
2. 기업투자촉진지구가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24조에 따라 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기업, 군내 신·증설투자기업, 군내로의 국내복귀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을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 지원) ① 군수는 기업이 도외에 소재하는 본점,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신설·증설 기업 지원) ① 군수는 군내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할 수 있다.

제8조(투자촉진기반시설 지원)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거나 개별입지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연관 산업의 집적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항만, 도로, 용수공급시설, 전기시설, 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지원하거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대송산업단지 기반 시설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 지원) ① 대송산업단지 기반 시설 중 기업이 설치한 기반 시설에 대하여 운영·유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연접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시설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11조(전략산업 투자기업 지원) 군수는 군의 입지 여건에 적합하면서 성장잠재력이 유망하고 도시 기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규칙으로 정하는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또는 시설보조금을 지원하거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제12조(군내인력 고용지원) 군수는 투자 및 군민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신규로 투자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기업이 군민을 고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소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 ① 군수는 미래 성장전략산업인 수소제품 및 제조업(이하 “수소산업”이라 한다)을 군내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하여 토지 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비용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비용에 대하여 50퍼센트의 범위에서 투자규모에 따라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보조금을 규칙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수소산업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2. 수소산업을 영위하는 상시고용 인원 30명 이상인 기업

③ 토지매입 및 공장시설 등의 투자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한차례에 한하고, 투자규모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과 한도는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국·도비를 지원받기 위하여 신청한 보조금은 지원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4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군수는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관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수소 소재 및 복합재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소 소재 및 복합재 제품의 판로개척 및 소비 장려를 위하여 공

공기관, 유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① 군수는 군내에서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보조금의 경우에는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우에는 건물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 및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공유재산의 임대) ① 군수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내에 하동군이 소유하는 토지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익계약으로 사용·수익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대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사용·수익 또는 대부 할 수 있는 투자기업은 제11조에 따른 전략산업투자기업에 한하며, 10명 이상 상시고용인원을 5년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서북부권역 등 균형발전대상지역 지원) ① 군수는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원을 결정한 기업에 대하여 투자기업의 고용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보조금 등의 지원규모를 2배의 범위에서 확대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차등지원 금액, 업종 등은 제32조에 따른 하동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8조(우선 지원에 대한 특례) 군수는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전략산업 업종 및 연구소
2. 서북부권역 등 낙후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3. 그 밖에 군수가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제19조(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20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 및 「하동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21조(지원제한) 군수는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22조(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 대상과 지원 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국내기업 지원규정 준용) 외국인투자기업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그 밖의 장에서 규정한 투자기업 지원 규정에 따른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과 국내기업 지원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제24조(사업타당성 분석용역)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투자자가 신규 투자 또는 새로운 사업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실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대해서는 법 제13조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제17조를 따르고,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및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6조(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처리 특례) 외국인투자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장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

제27조(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투자유치 지원의 재원확보를 위한 하동군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 2. 도 출연금의 상환금
- 3. 기금의 운용수익금
- 4. 그 밖의 수입금

③ 군수는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와 군수가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 2. 제31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 하는 사항

② 기금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하동군 투자유치위원회가 겸한다.

제29조(기금의 용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 1. 각종 보조금의 지급
- 2. 임대료 지원 및 임대산업단지 용지 매입
- 3. 사업장 부지 매입비 용자 지원
- 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 5.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범위는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 집행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약에 따른다.

③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④ 기금의 집행은 「하동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5장 하동군 투자유치 지원 체제

제32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투자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하동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기금 운영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포함한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하동군의회 의원
2.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
3. 투자유치 관계기관·단체의 임원,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5.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 임기 만료 외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 시책 및 투자유치기본계획
2. 국내외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에 관한 사항
5.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업지원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투자유치자문단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유치 전문가로 구성된 하동군 투자유치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단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국내외 기업 전·현직 임원
2.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3. 산업계, 대학교수 등 경제·투자유치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 임기 만료 외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자문단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야별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군수는 위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35조(자문단의 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군내 투자유치 전략 수립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2. 투자기업 발굴 및 투자유치 활동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6조(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 및 자문단(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제척된다.

②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등은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등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및 단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38조(투자유치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매년 3월 말까지 자문단의 자문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연도 투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투자유치기본계획에는 투자유치 목표, 투자유치 활동 및 지원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장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

제39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군수는 투자기업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도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분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0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투자유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투자계획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① 군수는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융자금은 조기상

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으로 정하는 사후관리기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 대상인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부지매입 계약이나 임차 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사업장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용자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업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사업장의 공사가 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보조금이나 용자금 지원받은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정산 시의 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8. 보조금이나 용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기간 내에 사업계획대로 달성하지 못한 경우
9. 그 밖에 보조금이나 용자금 지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거나 신속히 상환하여야 할 보조금이나 용자금이 있는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2조(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 또는 용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매입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착공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사업부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이나 용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 기간 이상 경영하고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3조(지원 대상 및 제한)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 및 용자금은 우리 군이 필요에 의해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을 하고 하동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② 사업 분야, 사업성, 고용 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여 투자유치 지원 목적에 적절하지 않거나 군정의 건전한 결집과 발전을 저해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44조(이중 지원에 관한 사항) ①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제11조에 따른 전략산업지원 보조금
 2. 제8조, 제9조에 따른 기반 시설 지원보조금
 3. 대송산업단지 준공 전 분양계약 기업에 대한 제29조제1항제3호의 사업장 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
-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이 국가나 도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③ 제2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이중 지원하는 경우 국가나 도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균비 분담액을 감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45조(투자유치 기여자 포상) 군수는 국내외 투자 및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개인이나 단체·기관·기업·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제46조(산업단지 분양전문대행사 지정) 군수는 대송산업단지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분양전문대행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준용) ① 국내기업의 투자에 대한 사항의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 ② 개별 법령의 규정과 기준에 따라 국가 등과 공동으로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의 규정과 기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4. 12.]

[경상남도하동군조례 제2556호, 2023. 4. 1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가”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5. “공장시설”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의 경우 공장을 말하며 제조업외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6. “수소산업”이란 각 목의 업종을 말한다.
 - 가. 수소의 생산·저장·운송·충전·판매업
 - 나. 수소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부품·소재업
 - 다. 수소 관련 장비의 제조업 등

제2장 투자유치 지원체제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하동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영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포함한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한다.

-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 1. 하동군의회 의원
 - 2.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
 - 3. 투자유치 관계 기관·단체의 임원,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 4.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 5.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⑥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⑦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의2(투자유치자문단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유치 전문가로 구성된 하동군 투자유치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②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자문단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 1. 국내외 기업 전·현직 임원
 - 2.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 3. 산업계, 대학교수 등 경제·투자유치 관련 전문가
 -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자문단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 군수는 위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 시책 및 투자유치기본계획
- 2. 국내외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에 관한 사항
5.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업지원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2(자문단의 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군내 투자유치 전략 수립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2. 투자기업 발굴 및 투자유치 활동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투자유치지원센터의 설치) ① 투자유치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업무담당과에 투자유치지원센터(이하 "투자유치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투자유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부서의 직원을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제8조(투자유치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2월 말까지 자문단의 자문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연도 투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투자유치기본계획에는 투자유치 목표, 투자유치 활동, 지원계획 및 예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장 투자유치진흥기금

제9조(투자유치진흥기금) 군수는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구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도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해야할 출연금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군수가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의2(투자유치진흥기금 설치·구성)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국내외 투자기업 지원의 재원확보를 위한 하동군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도 출연금의 상환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용자대상, 용자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 9. 30.까지로 한다.

제9조의3(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2. 제9조의6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 하는 사항

② 기금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하동군 투자유치위원회가 겸한다.

제9조의4(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1.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보조금
2. 산업용지 구입 및 임대
3.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범위는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9조의5(기금의 관리·운영)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기타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의6(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과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외국인투자 지원

제10조(외국인투자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는 「하동군세 감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제12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 및 「하동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국내기업과 같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입지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고용지원)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교육훈련지원)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설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 규정된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8조(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지원) 군수는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투자가 신규투자 또는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고자 관련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된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대해서는 법 제13조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제17조를 따르고,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및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장 국내기업 투자지원

제21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① 군수는 도외 소재 공장의 군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내로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제13조부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도 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군내의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수도권기업의 이전 등에 대한 지원 특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군내에 이전하거나 투자하는 수도권기업, 신증설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도외 기업의 본점등 이전지원) ① 도 외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공장시설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전보조금은 제21조제3항의 이전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24조(전략산업 투자기업 지원) 군수는 군의 입지여건에 적합하면서 성장잠재력이 유망하고 도시기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규칙으로 정하는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또는 시설보조금을 지원하거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제25조(군내인력 고용지원) 군수는 투자 및 군민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신규

로 투자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기업이 군민을 고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규칙으로 정하는 대규모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하여 산업단지내의 토지(임대료 포함) 및 개별입지 가격과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사업 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기반시설의 지원)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거나 개별입지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연관산업의 집적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항만, 도로, 용수공급시설, 전기시설,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지원하거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의2(대송산업단지 기반시설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 지원) ① 대송산업단지 기반시설 중 기업이 설치한 기반시설에 대하여 운영·유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연접지역 주민의 불편해소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시설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29조(공유재산의 임대) ① 군수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내에 하동군이 소유하는 토지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토지 등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투자기업은 제24조에 따른 전략산업투자기업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사용·수익 또는 대부를 받는 투자기업은 제24조에 따른 전략산업투자기업에 한하며, 10명 이상 상시고용 인원을 5년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제29조의2(공유재산의 임대특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내에 입주하

는 국내기업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소산업 관련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의 임대료의 요율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6장 수소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

제30조(수소산업 투자기업 지원) ① 군수는 군의 미래 성장전략산업인 수소제품 및 제조업(이하 “수소산업”이라 한다)을 군내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하여 토지 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비용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비용에 대하여 50퍼센트의 범위에서 투자규모에 따라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보조금을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는 수소산업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투자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2. 수소산업을 영위하는 상시고용 인원 30명 이상인 기업

③ 토지매입 및 공장시설 등의 투자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한차례에 한 하고, 투자규모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과 한도는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국·도비를 지원받기 위하여 신청한 보조금은 지원 횟수에 포함하 지 아니한다.

제31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군수는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관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수소 소재 및 복합재 제품을 우선 구매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소 소재 및 복합재 제품의 판로개척 및 소비 장려를 위하여 공공기관, 유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계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한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와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지원 대상 및 제한)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 및 융자금은 우리군이 필요에 의해 적극적으로 유치노력을 하고 하동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② 사업분야, 사업성, 고용창출효과 등을 고려하여 투자유치 지원 목적에 적 절하지 않거나 군정의 건전한 결집과 발전을 저해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

우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34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투자유치 지원과 관련하여 투자계획 및 지원조건의 이행 여부를 점검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받는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설정이나 가등기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징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는 국내외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자금지원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영위하여야 하며, 사업량의 축소나 업종변경 또는 위치변경 등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융자금은 조기상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제36조(투자유치 성공 포상) 군수는 국내외 투자 및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제37조(산업단지 분양전문대행사 지정) 군수는 대송산업단지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분양전문대행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8조(준용) ① 국내기업의 투자에 대한 사항의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개별 법령의 규정과 기준에 따라 국가 등과 공동으로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의 규정과 기준에 따른다.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공고 제2024-579호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 월 2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제안 이유

현행 시행규칙이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전면 개정하고,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 정비

- 입지·고용·교육훈련·설비·이전보조금 : 지원 비율과 지원한도액 상향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 군내 이전·신증설·대규모(연구소)·관광산업 지원 : 상위규칙에 따름 (안 제18조, 제18조의2, 제11조, 제11조의2, 제17조)
- 전략산업 투자기업 지원 : 첨단산업업종 지원 비율 상향(안 제15조)

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정비

-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개정(안 제20조)

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지원 등 정비

- 임대료 지원 : 상위 조례에 따른 신설(안 제24조)
- 기금융자 절차 : 융자지원 요건 및 기준, 타당성 평가 추가(안 제25조)

라.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 정비

- 보조금 등의 지원 결정 : 상위 조례 개정에 따른 신설(안 제29조)
- 투자기업 사후관리 : 부기등기·말소 관련 조항 신설,

반기별 점검 결과 보고 조항 신설(안 제32조)

마. 별표 및 별지 서식 상위 조례 일치화 및 신설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4년 4월 22일까지 하동군(참조 : 투자유치과, 전화 880-2645, FAX 880-2619, e-mail yuna86@korea.kr)에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별표, 별지서식 포함)
2. 현행 시행규칙, 관련 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금액”이란 부지 매입비 또는 임대료와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
2. “설비투자금액”이란 별표 2에 따른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을 말한다.
3. “투자계획”이란 투자기업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을 위하여 별지 제11호의 서식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상의 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을 말한다.
4. “상시고용인원”이란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하며,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의 범위에는 당해 기업의 지분을 100퍼센트 보유하는 자회사의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나.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5. “연구개발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중분류로 연구개발업인 업종을 말한다.

6. “ICT 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소분류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7. “제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 8. “정보통신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대분류로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 9.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10.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부 고시)」을 말한다.
- 11.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의 산업을 말한다.
- 1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나.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 13. “지역혁신융복합단지”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5호,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거점으로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 14. “지역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립한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에 포함된 육성 대상 산업을 말한다.
- 15. “사후관리기간”이란 제31조제1항에 따라 투자기업이 보조금 및 융자금 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5년까지를 말한다.

제2장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

- 제3조(기업투자촉진지구의 신청 등)** ①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33,058㎡ 이상이어야 한다.
- ②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로 이전하는 경우
2. 기업이 사업장을 새로이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제4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 대상)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투자촉진지구 안에 부지 매입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일 것
2.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연구소, ICT기업, 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 이상일 것
3. 투자 사업장에서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이 10명 이상일 것
4. 기업이 도 내의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군내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

② 제5조에서부터 제9조까지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투자규모별 지원한도액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입지보조금)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부지 매입비의 7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30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 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5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고용보조금)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10명 초과 상시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12개월의 범위에서 기업당 20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기한은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10

명 이상의 내국인을 신규로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10명을 초과한 1명당 월 100만원까지 12개월의 범위에서 기업당 10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의 교육과 투자 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기한은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8조(설비보조금)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20억원(연구소·ICT기업·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투자금액은 착공신고일부부터 최장 3년 이내에 투자하는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기한은 착공신고일부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9조(이전보조금)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도외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5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가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가액은 별표 2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기계장비의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최종 기업회계기준 상의 유형자산가액을 말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본점 이전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기업이 본점을 군내로 이전할 때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초과 인원 1명당 30만원을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본점 이전일부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도의 기업의 군내 이전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시행규칙」(이하 “도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다.

제12조(신설·증설 기업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은 도 규칙 제18조의2에 따른다.

제13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은 도 규칙 제11조에 따른다. 다만, 대규모 연구소의 특별지원은 도 규칙 제17조에 따른다.

제14조(투자촉진기반시설 지원)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기반시설 건설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건설비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 대하여는 90퍼센트까지 보조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착공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기반시설의 설계서 및 준공내역
2. 투자사업비 내역 및 투자금액에 대한 증빙자료 등

③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도로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이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일 것

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법」상의 국도·지방도·국가지원 지방도 및 군도일 것

2. 상·하수도시설: 경제자유구역 안의 상·하수도관로와 연결되지 아니하고 통과하는 상·하수도관로

3. 전기시설: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시설로부터 경제자유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의 도시·군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개별필지”라 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다만, 개발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선로(地中線路)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퍼센트의 비율로 경제자유구역 안의 전기간선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4. 가스공급시설: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 난방용은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개별필지 안에 정압조정실(일정 압력 유지·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5. 지역난방시설: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 입구 차단 밸브까지의 열수송관
6. 통신시설: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 및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별필지 안의 최초 단자까지의 케이블 시설
7. 항만시설: 「항만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본시설과 기능시설

제15조(전략산업 투자기업 지원) ① 조례 제11조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군의 전략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기존의 사업장 부지 및 건물 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100실 이상의 호텔업 및 휴양콘도미니엄업
2.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4조제3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성화업종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첨단업종
5. 그 밖에 시설투자 금액이 100억원 이상의 민자사업 또는 연구소·연구개발업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또는 업종

② 조례 제11조에 따른 입지보조금의 지원은 제5조를 준용하고 설비보조금의 지원은 10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설비보조금과 입지보조금은 각각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입지보조금과 설비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입지보조금의 경우 분양계약일부부터 1년 이내 또는 설비보조금의 경우 착공일부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차별 투자계획의 경우에는 공장 시설

등록에 의한 사업개시일(증설한 경우에는 시설이 준공된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송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지보조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단, 입주기업의 요청 시 입지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설비보조금으로 대체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역특성화업종과 첨단업종의 경우 분양가액의 100분의 30 이하로 한다. 이 경우 m²당 지원단가는 76,610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1항제5호에 따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또는 업종의 경우 분양가액의 100분의 25 이하로 한다. 이 경우 m²당 지원단가는 63,840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군수는 입지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분양 대금이 완납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단, 대송산업단지 준공 이전 입주기업에 한해서는 착공 시 지원 금액 결정액 중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분양 대금이 완납된 것을 확인한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⑥ 제2항 및 제4항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을 군수가 기업에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제16조(군내인력 고용지원)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군내인력 고용보조금은 신규 투자로 공장을 신설한 경우로서 공장등록일부터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이 주민등록상 군민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6개월 기간에서 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기업당 10명 이내로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고, 3년 이내에 추가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이전에 지원받을 당시의 상시고용인원을 초과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고용 후 6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수소산업 투자기업 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수소산업의 해당여부를 수소관련 전문가 단체·연구소 등

관계기관에 검토 의뢰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3조제3항의 투자규모에 따른 보조금 지원한도는 별표 3과 같고, 수소산업 투자기업 지원시 기업이 투자한 토지구입비 인정액은 토지구입비 이외의 투자인정액 합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수소산업 투자시설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분공장등록 또는 공장등록을 완료한 날부터 1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조례 제15조에 따른 지원은 도 규칙 제11조의2에 따른다.

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제19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조례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한 각종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로 한다.

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신성장동력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이 사업장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조선, 생명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이 사업장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업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4.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1항제3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6.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조례 제23조에 따라 외국인투자 지원을 신청하는 투자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외국인투자 환경개설시설 지원) ① 조례 제22조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의 지원 대상과 지원하는 사업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학교 신축의 경우 총사업비(부지매입비, 건축비)의 50퍼센트 이내
2. 외국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50퍼센트 이내
3. 의료시설 등 서비스 지원 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
4.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 외국인학교 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지원)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비용의 지원은 투자금액이 1천만달러 이상인 사업에 한정하되 5억원까지 용역비의 100분의 20이하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계획된 투자금액이 100분의 10이상의 투자가 실현되었을 때 지급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업확정 후 1년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계약금액 중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건설부문의 기본조사설계비의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2조(민원처리의 특례) 조례 제26조에 따라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할 민원사무의 종류와 절차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다.

제4장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지원 등

제23조(기금의 지원) 군수는 조례 제29조에 따라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을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임대료 지원) ① 조례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 임대료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업이 군내에 사업장을 새로이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다만, 도내 기업인 경우는 기존사업장을 유지(폐쇄, 매각, 임대 및 축소 금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조업 중 지역혁신성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일 것
3. 설비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국·공유지 내에 임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일 것
5. 투자계획 완료기한이 임대계약일부터 3년 이내일 것

② 임대료의 지원은 토지 임대료의 70퍼센트 범위에서 연간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 기간은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10년까지로 한다.

③ 임대료 지원 기간 중 투자계획 완료기한까지 제1항의 요건에 미달할 경우 제31조에 따른 정산 이후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며, 투자계획 완료 이후 제1항의 요건에 미달할 경우 미달기간은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기금용자 절차 등) ① 조례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금의 용자 대상 및 범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자대상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의 갈사산업단지 및 대송산업 단지에 한하여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는 경우로 한다.
2. 용자대상 업종은 도 규칙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업종과 군수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용자 한도액은 100억원으로 하고 용자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자의 지원 요건 및 기준은 기업이 투자하는 지역의 접근성, 집적도, 인력수급, 부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으며,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규정」(이하 “운용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부지 매입을 위해 기금을 용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용자금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별표 4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타당성 평가는 총점이 50점(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42.5점) 이상이고 재무건전성(평균매출액, 상시고용인원, 기업신용등급, 총자산 증가율,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를 일컫는다) 평가 점수의 합이 35점(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27.5점) 이상이어야 한다.

⑤ 용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투자계획을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달성하여야 한다.

제26조(용자금의 상환) ① 용자금의 원금은 5년 거치 후 3년간 동일하게 나누어 상환한다.

② 조례 제41조제1항에 따른 용자금의 조기상환 명령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원금에 조기상환 사유발생일부터 취급금융기관의 같은 조건의 기업 대출 평균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부과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③ 조례 제41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의 경우 조기상환 사유 발생일은 용자금 지원일로 한다.

④ 상환 기한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은 취급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기업 대출 상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더한다.

제5장 하동군 투자유치 지원 체제

제27조(투자유치위원회 운영) ① 조례 제32조에 따른 하동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⑥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장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

제28조(보조금 등의 신청) ① 투자기업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1개월 이내에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군 자체 지원은 제외)해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신청일은 군수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 공문이 도지사에게 접수된 날을 말한다.

②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환수 또는 반납처분을 받은 경우 및 이 규칙의 금지·의무규정을 위반하여 전액환수 또는 전액반납 처분을 받은 경우(처분일부부터 5년 경과 후 신청 가능)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선행 투자정산 결과에서 투자금액 달성률이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사후관리기간 고용인원 평균 달성률이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투자 또는 고용인원 미달에 따른 환수를 제외한 이 규칙의 금지·의무규정을 위반하여 일부 환수 또는 일부 반납 처분을 받은 경우(처분일부부터 3년 경과 후 신청 가능)

3.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 또는 사업 이행을 포기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납한 경우(포기신청일부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4.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500퍼센트 이상인 경우(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라 하더라도 투자기업으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50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

5.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③ 제13조의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대상 기업 중 군내 경제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29조(보조금 등의 지원 결정) ①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 및 지원 대상의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기업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투자기업으로부터 보조금 환수와 융자금 상환 등을 위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담보 확보 수단은 저당권, 가등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증권 및 수익증권을 제외한다)으로 하되, 같은 항 제3호 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 보증서의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증기일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융자금의 상환을 위한 담보 확보는 운용 규정을 따른다.

④ 이 조례 및 시행규칙(이하 “조례 등”이라 한다)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지원 대상은 도 또는 군과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하며,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도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⑤ 투자협약은 보조금신청일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단, 투자계획완료일 또는 사업개시일 이후 신청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⑥ 행정 또는 기업의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투자협약 체결 지연이 되는 경우 투자행위일로부터 1개월 이내 투자협약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보조금 및 융자금의 용도 외 사용 제한) 조례 등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그 지급 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 및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보조금 등의 정산) ① 조례 등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정산신청서를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다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정산결과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 자체 지원의 경우에는 정산결과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정산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이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투자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 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투자이행상황 점검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투자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및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1. 지원받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 또는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투자기업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라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른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④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확인을 받아 담당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매 반기 경과 후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 자체 지원의 경우에는 점검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한다.

1. 교부받은 보조금액 또는 융자금액
2. 지급한 보조금액 또는 융자금액
3. 집행잔액 발생사유 및 조치사항
4. 투자계획 이행 사항
5. 미이행 기업에 대한 지연 기간, 지연 사유 및 환수 여부 등 조치계획 및

조치 사항 등

- 제33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조례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서의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원 계획 변경 등 귀책 사유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받은 해당 기업 외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 ② 군수는 조례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하며, 그 환수 금액 산정은 별표 5에 따른다.
- ③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사후관리기간 동안 정산 시의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였을 때는 연평균 상시고용 미달률만큼 취급금융기관의 같은 조건에 따른 기업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정산통보일 부터 기산한 이자를 부과하되, 상시고용인원이 미달한 해가 3개년 미만이고 마지막 사후관리기간 해에 상시고용인원을 회복한 경우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7장 보칙

제34조(투자유치 기여자 보상 등) ① 조례 제45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 기업 또는 자본의 유치금액이 건당 5백만달러 이상인 경우
2. 국내 기업 또는 자본의 유치금액이 건당 50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연도 투자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최초 투자한 날부터 5년까지만 지급할 수 있으며, 투자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한 경우에 한한다.

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가산점 부여, 희망 보직 배치, 특별승급 또는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를 병행할 수 있다.

④ 포상금 지원 기준은 별표 6을 따르며,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기준 등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5조(산업단지 분양전문대행사 보상금) 조례 제46조에 따라 투자유치자문관, 컨설팅업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를 실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에 의한 금액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융자금) 신청서

[앞 면]

보조금(융자금) 신청서	<input type="checkbox"/>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본점 이전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도외기업 군내 이전 지원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대규모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전략산업 투자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부지매입비 융자금		
<input type="checkbox"/>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수소산업 투자시설비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임대료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		
지원대상 (투자사업자)	기업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남, 여)		
	법인본사 소재지			전화번호
지원내용	보조금(융자금) 유형		기업의 구분	
	<input type="checkbox"/> 입지보조금 <input type="checkbox"/> 설비보조금 <input type="checkbox"/> 고용보조금 <input type="checkbox"/> 교육훈련보조금 <input type="checkbox"/> 이전보조금 <input type="checkbox"/> 본점 이전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도외기업 군내이전 <input type="checkbox"/> 신설·증설 기업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대규모 특별지원 <input type="checkbox"/> 대규모 연구소 <input type="checkbox"/> 전략산업 투자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부지매입 융자금 <input type="checkbox"/> 사업타당성 분석용역 <input type="checkbox"/> 수소산업 투자시설비 <input type="checkbox"/> 임대료 보조금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대기업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input type="checkbox"/> 외국인투자기업 <input type="checkbox"/> 창업기업	
투자사업지 유형	입지 유형		입주 유형	
	<input type="checkbox"/> 산업단지 <input type="checkbox"/> 개별입지		<input type="checkbox"/> 매입 <input type="checkbox"/> 임대	
투자사업장 유형	<input type="checkbox"/> 공장 <input type="checkbox"/> 본점 <input type="checkbox"/> 연구소 <input type="checkbox"/> 기타()			
유치 및 투자일정	법인성립일	(최초)공장등록일	MOU 체결일	보조금 접수일(기업→시·군)
	'00.00.00	'00.00.00	'00.00.00	'00.00.00
	토지매입(임대)계약 체결일	착공(예정)일	투자완료(예정)일	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
'00.00.00	'00.00.00	'00.00.00	00년 00개월	
사업장의 내용	소재지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기존사업장			m ²	m ²
투자사업장			m ²	m ²
업종	업종명		분류번호 (KSIC 5단위)	생산품
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남: , 여:) 명		(남: , 여:) 명	(남: , 여:) 명
투자금액	총 투자금액 (A=B+C)	토지 매입가액 또는 연간 임대료(B)	설비투자금액(C=D+E)	
	천원	천원	건설투자비용+기계장 비구입비용(D)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임대기간	천원	천원

[별지 제2호서식]

기반 시설 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	회사명		전화번호 (FAX)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사업자등록일 (공장등록일)		
공장 소재지	이전 전		업종 (분류번호)	이전 전	
	이전 후			이전 후	
이전(투자)공장 규모					
부지면적(m ²)	제조시설면적(m ²)	부대시설면적(m ²)	공장가동개시일	종업원수	
기반시설 투자내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량	투자금액(천원)		
<p>「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반 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신 청 인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p>					
하 동 군 수 귀 하					
구 비 서 류					
<p>1. 해당 기반 시설의 설계서 및 준공 내역 1부</p> <p>2. 투자사업비 내역 및 투자 금액에 대한 증빙자료 1부</p>					

[별지 제3호서식]

군내인력 고용보조금 신청서

외국인투자

신청 기업	상호(대표자명)			
	주소 및 위치			
	연락처	전화 :	팩스 :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업종	
	보조금 신청 횟수	회	신규 투자규모	
	투자완료일 직전 3개월 월평균 인원		신청일 직전 3개월 월평균 인원	
	지원 신청 인원 (신청일 직전 3개월 연속 근무인원)	총 명 (남: , 여:)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실 및 유사보조금 중복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신청액	보조금	총금액 :	원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군내인력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하 동 군 수 귀 하

구 비 서 류

1. 신규 투자 및 고용내역서 1부
2. 보조금 중복수급여부 조회 신청서 1부

[별지 제4호서식]

외국인투자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신청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주소 (법인소재지)		전 화 번 호	
			F A X	
사업유형	<input type="checkbox"/> 학 교 시 설 <input type="checkbox"/> 주 택 <input type="checkbox"/> 지 원 시 설			
	소 재 지			
	면 적	부 지	건 축 물	
		m ²	m ²	
	건 물 구 조			
	건축허가일		준공일	
투자유형	<input type="checkbox"/> 신 축 <input type="checkbox"/> 기존건물 매입			
투자금액	금 원 (USD 상당)			
보 조 금 신 청 액				
학교시설 : 원		주택 : 원		지원시설 : 원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하 동 군 수 귀 하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서식]

외국인학교 운영보조금 신청서

학 교 명 (국 적)		설립자 성명 (국 적)	(남,여)
학교장 성명 (국 적)	(남,여)	본국 학력 인정 여부	
소 재 지			
설립년월일		설립 인가 번호	
학 생 수	총 인원	명 (외국인학생수	명, 남: , 여:)
교 사 수	총 인원	명 (외국인교사수	명, 남: , 여:)
보조금 신청액	원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학교 운영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하 동 군 수 귀 하

구 비 서 류

- 1. 설립인가증 사본 1부.
- 2. 외국인 학생 및 교사 현황 자료
- 3. 전년도 수입 및 지출 현황
- 4. 수입 전망 및 운영비 집행계획

[별지 제6호서식]

보조금(융자금) 정산신청서

기업명		대표자	
보조금(융자금) 유형	<input type="checkbox"/>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도외 기업 군내 이전 지원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전략산업 투자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input type="checkbox"/> 임대료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본점 이전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대규모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부지매입비 융자금 <input type="checkbox"/> 수소산업 투자시설비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	
보조금(융자금) 신청일		보조금(융자금) 지원결정 통지일	
착공신고일(계획)		착공신고일(실제)	
투자완료일(계획)		투자완료일(실제)	
보조금(융자금) 수령일자		보조금(융자금) 유형	
보조금(융자금) 결정금액	천원	보조금(융자금) 명	지원 금액
			천원
			천원
보조금(융자금) 교부금액	천원	보조금(융자금) 명	지원 금액
			천원
			천원

구분		투자계획 기준	정산기준
투자 금액	부지매입비	천원	천원
	설비투자금	천원	천원
신규 고용인원		명	명

사업이행여부 자체평가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일부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사유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융자금) 정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하 동 군 수 귀 하

[별지 제7호서식]

보조금(융자금) 정산결과서

[앞 면]

기업명		대표자	
보조금(융자금) 유형	<input type="checkbox"/>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도외기업 군내 이전 지원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전략산업 투자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input type="checkbox"/> 임대료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본점 이전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대규모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부지매입비 융자금 <input type="checkbox"/> 수소산업 투자시설비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	
보조금(융자금) 신청일		보조금(융자금) 지원 결정 통지일	
착공신고일 (계획)		착공신고일(실제)	
투자완료일 (계획)		투자완료일(실제)	
보조금(융자금) 지급일자		보조금(융자금) 유형 * 기업투자촉진지구 작성	
기존사업장	<input type="checkbox"/> 폐쇄(청산) <input type="checkbox"/> 매각(양도) <input type="checkbox"/> 유지 <input type="checkbox"/> 계획에 따른 축소		

구분		투자계획 기준	정산기준
투자 금액	부지매입비	천원	천원
	설비투자금	천원	천원
상시고용인원(전체)		명	명
신규 고용인원		명	명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명	명

사업이행여부 평가	<input type="checkbox"/> 완료 <input type="checkbox"/> 일부 완료 <input type="checkbox"/> 일부 환수 <input type="checkbox"/> 전액 환수
	사유

[뒷 면]

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	천원	00 보조금	도비	천원
			군비	천원
		00 보조금	도비	천원
			군비	천원
1차 지급금액 (B)	천원	00 보조금	도비	천원
			군비	천원
		00 보조금	도비	천원
			군비	천원
미지급금액 (C=A-B)	천원	00 보조금	도비	천원
			군비	천원
		00 보조금	도비	천원
			군비	천원
정산금액 (D)	천원	00 보조금	도비	천원
			군비	천원
		00 보조금	도비	천원
			군비	천원
산정 기준				
2차 지급금액 (E=D-B)	천원	00 보조금	도비	천원
			군비	천원
		00 보조금	도비	천원
			군비	천원
집행잔액 (A-(B+E))	천원	00 보조금	도비	천원
			군비	천원
		00 보조금	도비	천원
			군비	천원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융자금) 정산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하 동 군 수 (관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제32조제3항 관련)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 ¹⁾	명칭	면적(m ²)
사후관리기간 (사업이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이 부동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하 동 군 수

직인

유의사항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하동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함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9호서식] (제32조제4항 관련)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 ¹⁾	명칭	면적(m ²)
말소 사유		
사후관리기간 (사업이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이 부동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하 동 군 수

직인

[별지 제10호서식]

투자유치 성공포상 신청서						
신 청 인 인적사항	소속(주소)				직 명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연 락 처	전화	FAX			
투자유치 내 역	투자자명				국 적	
	기 업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소 재 지					
	업 종					
	입주유형	<input type="checkbox"/> 신 설	<input type="checkbox"/> 이 전			
	투자유형	<input type="checkbox"/> 단 독	<input type="checkbox"/> 합 작 ()%			
	공장규모	부지	m ² ,	건물	m ²	
	종업원수	명(사업개시일 기준)				
	투자금액	원				
<p>「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에 따른 포상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남 / 여) (서명 또는 날인)</p> <p>하 동 군 수 귀 하</p>						
구 비 서 류					수수료	
					없 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치 공적 기술서 2. 사업(이전 또는 신설)계획서 3.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투자유치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5. 양해각서 등 기타 필요한 자료 						

[별지 제11호서식]

사 업 (투 자) 계 획 서

작 성 일 :

기업체명 : _____ (인)

대 표 자 : _____

귀사에서 제출한 일체의 모든 자료는 우리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인센티브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만 활용하고, 일체의 기업비밀은 보장됩니다.

다만,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신청서는 사실을 근거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된 내용은 심사와 직접 관계되므로 가능하면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서식에 맞지 않는 내용은 별도자료로 제출 가능

□ 투자기업 개요

기 업 체 명		대 표 자	
설 립 일 자		법인(주민)등록번호	
홈페이지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표준산업분류코드	
주요 생산품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input type="checkbox"/> 보유 <input type="checkbox"/> 없음	건설업명	

회 사 소 개

산 업 분 석

생산공정도

생산공정도	생산공장 요약 설명
<div data-bbox="150 1137 762 1249"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50px;"></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data-bbox="150 1317 762 1429"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50px;"></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data-bbox="150 1496 762 1608"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50px;"></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data-bbox="150 1675 762 1787"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50px;"></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data-bbox="150 1854 762 1966"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50px;"></div>	

투자 설비 내역서

품명	규격(용량)	내용년수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용도)

□ 투자의 개요

기존 사업장 주소	본사		소유 / 임차
	공장		소유 / 임차
	연구소		소유 / 임차
투자지 주소			소유 / 임차

투자기간

토지매입계약체결일		착공(예정)일	
공장등록(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		투자완료(예정)일	

투자면적(단위 : m²)

구 분	부지	건물용지	건물연면적
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			
계			

투자금액(단위 : 천원)

구 분	계	N	N + 1	N + 2	N + 3
계					
토지 매입가액					
설비투자 금액	소계				
	건설투자				
	기계장비				
	근로환경				

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

건설투자	
기계장비	
근로환경	

투자의 사유

자금조달 계획

자금재원 조달계획(단위 : 천원)						
투자금액	자기자본		외부조달		계	
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						
자기자본						
외부자본					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참고사항						
부채비율	총부채 (A)		자기자본 (B)		부채비율 (A/B)	%
순유동자산	유동자산 (A)		유동부채 (B)		순유동자산 (A-B)	

고용 계획

고용계획(단위 : 명)						
구분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A)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B)				투자 후(A+B)
		N* *신청년도	N+1	N+2	N+3	
계						
연구·개발						
사무·영업						
생산						
고용사유						
연구·개발직						
사무·영업직						
생산직						

최근 3년간 주요 경영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당기 순이익	영업 이익	이자 비용
N*-1 *신청년도							
N-2							
N-3							
최근 3년 평균 증가율							

신규투자(안)의 사업성 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								
연 도	N*+1 *사업개시일	N+2	N+3	N+4	N+5	N+6	N+7	N+8	
매출액									
영업이익									
연평균 증가율(CAGR)			매출액		%		영업이익		%
사업성 전망									

신청지역을 투자대상으로 선정한 이유
(대체 투자 지역과 비교시 장·단점 포함)

향후 5년간 지역 및 지역경제 기여효과(직·간접 고용규모, 세금납부, 원부
자제 조달선 및 제품 판매선에 대한 전후방 연관효과 등 포함)

기타 필요한 사항

[별지 제12호서식]

보조금(융자금) 투자이행확약서

○ 관련 규정: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

보조금(융자금) 신청 당시 제출한 투자계획 등에 따른 투자규모, 고용규모, 투자완료일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며,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정산할 것을 확약합니다.

○ 투자사업장(소재지)	
○ 투자기간	~ (년)
○ 총 투자규모	000 천원
- 입지 투자	000 천원
- 설비 투자	000 천원
○ 고용계획(명)	00 명
○ 보조금 지원규모	000 천원
- OO 보조금	000 천원
- OO 보조금	000 천원
○ 사후관리기간	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5년까지

관련 규정의 지원대상, 요건, 절차, 보조금의 환수, 융자금의 조기상환, 융자금의 이자부과, 기존 사업장 유지 등의 내용 및 정산 후 사후관리 기간 등의 내용을 확인하였고 이를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위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융자금) 환수(조기상환) 결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환수(조기상환)에 해당하는 금액(이자 포함)을 해당 지자체에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확 인 일 : 20____년 ____월 ____일

확 약 자 : (기업명) (자필) (직인)

(대표자) (자필) (서명)

[별 표]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기준(투자규모별 한도액)

(단위 : 억원)

구분	지원기준	입지 보조금	고용 보조금	교육 훈련 보조금	설비 보조금	이전 보조금	비 고
기업 투자 촉진 지구	투자 금액이 2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10	3	2	2	2	투자금액 50억원 미만 해당
	투자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15	10	5	10	5	투자금액 100억원 미만 해당
	투자 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20	15	7	20	7	투자금액 200억원 미만 해당
	투자 금액이 20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30	20	10	30	10	

※ 지원 범위 등은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따름

[별표 2]

설비투자금액의 인정범위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구분	인정범위
건설투자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사업장의 건설투자비용(설계비, 기반시설설치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투자비용은 한국부동산원「건물신축단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단, 단가표에 수록되지 않은 건물의 표준단가는 해당 건물과 유사한 용도·구조의 건물 표준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 증설인 경우에는 증설부분 건축물만 해당 * 건물(폐건물포함) 매입비용, 폐건물에 속해 있던 기계장비 매입비용 및 철거비용은 불인정
기계장비구입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 기계장비 구입비용. 다만, 이동형 기계장비라도 현장평가를 통해 생산에 필수적인 설비라 인정되는 경우는 포함(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 기계장비만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게차, 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상품개발에 필수적인 S/W 및 이의 구동에 필요한 H/W)는 포함(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만 해당) * 인건비, 원자재, 금형, 공구기구비품,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집기, 조경 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기계장비의 리스 또는 렌탈 비용 등은 불인정 * 중고설비구입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근로환경개선시설투자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숙사,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및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의 건설투자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6의2호, 제7호 및 제9호에 의해 지정된 시설(다만, 보육시설은 제외) * 건설투자 및 기계장비구입 비용의 10%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

※ 설비투자금액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해야 함 (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 불가)

[별표 3]

수소산업 투자 규모별 보조금 지원한도

투자규모 (투자인정액-10억)	지 원 한 도
250억원 이상	80억원 이상 ~ 100억원 이하
150억원 이상 ~ 2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 8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 1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100억원 미만	30억원 미만

[별표 4]

기금 용자 타당성 평가표 (제25조제4항 관련)

1. 최근 1년이상 ~ 3년미만 평균매출액

평균매출액		점 수
일 반	연구소·연구개발업· ICT기업·사회적기업	
10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15
75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3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2
50억원 이상 75억원 미만	25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9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6
30억원 미만	15억원 미만	3

* 최근 3년미만 사업실적의 평균매출
 (직전1년도매출액 + 직전2년도 매출액) ÷ 2(단, 사업기간이 1년인 기업은 직전1년도 매출액)

2. 상시고용인원

상시고용인원		점수
일 반	연구소·연구개발업· ICT기업·사회적기업	
25명 이상	20명 이상	15
20명 이상 25명 미만	15명 이상 20명 미만	12
15명 이상 20명 미만	10명 이상 15명 미만	9
10명 이상 15명 미만	5명 이상 10명 미만	6
5명 이상 10명 미만	5명 미만	3

3. 기업신용등급

신용등급	점수
BBB- 이상	20
BB- 이상	16
B0 이상	12
CCC- 이상	8
CCC-미만	4

※ 용자금 신청시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기업 등급

4. 최근 3년 총자산 증가율

평 가 척 도	점 수
20% 이상	5
15% 이상 ~ 20% 미만	4
10% 이상 ~ 15% 미만	3
5% 이상 ~ 10% 미만	2
5% 미만	1

* 최근 3년 총자산증가율 = $\frac{[(\text{당기 총자산증가율} \times 2) + (\text{전기 총자산증가율} \times 1)]}{3}$
 * 총자산 : 부채와 자본총계

* 당기 총자산증가율 = $\frac{\text{당기말 총자산} - \text{전기말 총자산}}{\text{전기말 총자산}} \times 100$

* 전기 총자산증가율 = $\frac{\text{전기말 총자산} - \text{전전기말 총자산}}{\text{전전기말 총자산}} \times 100$

※ 업력2년 이상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2년간 총자산증가율(당기 총자산증가율)로 산정
 ※ 업력1년 이상 2년 미만 기업의 경우 1점 부여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5. 부채비율

평 가 척 도		점 수
일 반	연구소·연구개발업·ICT기업·사회적기업	
30% 미만	50% 미만	5
30% 이상 ~ 60% 미만	50% 이상 ~ 100% 미만	4
60% 이상 ~ 90% 미만	100% 이상 ~ 150% 미만	3
90% 이상 ~ 120% 미만	150% 이상 ~ 200% 미만	2
120% 초과	200% 초과	1

* 최근 결산일기준 부채비율 = $\frac{\text{부채총계}}{\text{자본총계}} \times 100$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6. 차입금 의존도

평 가 척 도	점 수
15% 미만	10
15% 이상 ~ 20% 미만	8
20% 이상 ~ 25% 미만	6
25% 이상 ~ 30% 미만	4
30% 초과	2

7. 신규투자금액

신규투자금액	점수(10점 만점)
설비투자금액	5억원당 1점

※ 연구소·연구개발업·ICT기업·사회적기업은 2억원당 1점

8. 투자기간

신청일로부터 투자완료일	점 수
1년 이내	10
1.5년 이내	8
2년 이내	6
2.5년 이내	4
3년 이내	2

* 착공신고필증 상 착공예정일자로부터 투자완료일까지의 기간
 - 폐건물 리모델링의 경우처럼 착공신고필증 제출이 어려운 경우 융자금신청서 상 착공일부터 기산

9. 신규고용

신규고용	점수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규정」 별표 1(기금 용자 지역별 지원 기준) 신규상시고용인원	10

* 지원기준 초과 상시고용인원 1인당 0.5점 가점 부여

10. 균형발전 하위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점 가점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별표 5 (보조금 지원범위 및 지역구분) 적용

[별표 5]

보조금 환수 기준 (제33조제2항 관련)

구 분	산정 방식
전액 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교부 조건 (교부결정 사항 포함) 및 승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조례 제41조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9호)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보조금 수령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조례 제41조제1항제2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동군수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부분 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정산 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조례 제41조제1항제7호) <p>(1) 원칙 : 사후관리기간 종료시점에 사후관리기간 동안 투자기업 고용의 평균 달성률을 계산하여 환수</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환 수 액 = 보조금 X (1 - 평균달성률)</p> <p>* 평균달성률 = 사업이행기간 연도별 고용인원 달성률의 합/ 사업이행기간</p> <p>* 고용인원달성률 = 연평균 상시고용인원/정산시 상시고용인원</p> </div> <p>※ '정산시 상시고용인원' 적용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별표4에 따른 정산시 '정산시점 상시고용인원'이 '사업계획상 고용 목표' 초과 시 : '사업계획상 고용 목표' ② 별표4에 따른 정산시 '정산시점 상시고용인원'이 '사업계획상 고용 목표' 미달 시 : '정산시점 상시고용인원' <p>※ 평균달성률은 1을 초과할 수 없음</p> <p>(2) 예외(미환수) : ① 정산 시 고용인원에 미달한 해가 3개년 미만이고, 동시에 ② 마지막 사업이행기간 해에 정산 시 상시고용인원을 회복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기간 내 휴 · 폐업(조례 제41조제1항제1호) → 사업 불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

[별표 6]

투자유치 포상 기준

구 분	기 준			
포상대상	민간인, 기관단체, 공무원			
포상종류	표창 및 포상금 지급			
포상금 산정액 (①)	유치구분	투자규모	성 과 금	상한액
	투자금액 (민간인, 기관단체)	50억원 ~ 100억원	투자금액 × 0.001(0.1%)	1,000만원
		100억원 초과 ~ 500억원	(투자금액-100억원) ×0.0004(0.04%) + 1,000만원	2,600만원
		500억원 초과 ~ 1,000억원	(투자금액-500억원) ×0.0003(0.03%) + 2,600만원	4,100만원
		1,000억원 초과	(투자금액-1,000억원)×0.0002(0.02%) + 4,100만원	2억원
	투자금액 (공무원)	50억원 ~ 100억원	투자금액 × 0.0005(0.05%)	500만원
		100억원 초과 ~ 500억원	(투자금액-100억원) ×0.00004(0.004%)	1,600만원
		500억원 초과 ~ 1,000억원	(투자금액-500억원) ×0.00003(0.003%) + 500만원	2,000만원
1,000억원 초과		(투자금액-1,000억원)×0.00002(0.002%) + 5,900만원	1억원	
포상금 적용율 (②)	적용율	적 용 대 상		
	100%	투자자 발굴, 정보 입수, 입지 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당사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70%	투자자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0%	투자자 발굴, 정보 입수를 통하여 투자유치 성사까지 당해 부서에서 공동 추진한 경우		
	30%	투자자 발굴, 정보 입수 후 주관 부서로 이관 추진		
비 고	○ 포상금 지급액 = 산정액(①) × 적용율(②) ○ 투자금액 = 토지매입비+건축비+시설비 ○ 외국인투자는 미화를 포상금 지급 시점의 환율로 환산하여 적용 ○ 모든 포상은 하동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 4. 12.] [경상남도하동군규칙 제1259호, 2023. 4. 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지보조금”이란 군내에서 제조업,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물류, 연구개발 또는 관광업 등의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액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고용보조금”이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시설보조금”이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이전보조금”이란 도 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거나 본점 등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6.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하며, 「과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과건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과건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 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7.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공장시설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에 기계 또는 시설·장치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

나. 같은 법인이 기존의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회계상 별도로 회계처리 될 수 있는 공장시설 또는 기계·시설·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다. 건축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을 인수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다만, 건축공사의 진척에 따라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8. “관광숙박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

9.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시설을 말한다.

10. “설비투자금액”이란 별표 3에 따른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 개선시설 투자비용을 말한다.

11. “투자계획”이란 투자기업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을 위하여 제출하는 별지 서식 제8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상의 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을 말한다.

12. “사후관리기간”이란 제26조제1항에 따라 투자기업이 보조금 및 융자금 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5년까지를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운영) ①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하동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⑥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삭제><개정 2023.4.12.>

제5조(기금용자 대상 등) ① 조례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용자대상, 용자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단, 대송산업단지의 준공 전 분양계약하는 기업에 한하여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있다.

- 1. 용자대상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의 갈사산업단지 및 대송산업 단지에 한하여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 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는 경우
- 2. 용자대상 업종은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 3. 용자한도는 공장시설 등 부지 매입금액의 60퍼센트 이내에서 100억원
- 4. 용자의 이자는 무이자

② 제1항에 따른 공장부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장시설 등 부지 매입을 위하여 기금을 용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용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투자계획을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달성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따르는 계약 및 수입·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기금수입금의 징수·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따르는 수입 및 지출업무를 담당한다.

② 기타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7조(민원처리의 특례) 조례 제10조에 따라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할 민원사무의 종류와 절차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다.

제8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조례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 정한 각종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최대 주주이어야 한다.

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조선, 생명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업외의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4.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의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1항제3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6.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투

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입지지원)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분양가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 가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분양계약서 등에 따른 분양가의 차액에 한정하여 지원하되, 제조업인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군수가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 통보한 날부터 5년 이상 경영 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5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14조 및 제25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1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12개월 기간에서 초과 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기업당 3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1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12개월의 기간에서 10명을 초과한 1명 당 월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 지급기간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만 지원하되 기업당 지원총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투자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보조금)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20억원(연구소, ICT

기업, 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지원)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에 지원하는 사업비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해당되는 시설을 건립하는 때에 사업비 및 운영비는 총비용의 50퍼센트 이내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9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군수가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2억원 이내

②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외국인학교 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타당성 분석·용역 지원)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비용의 지원은 투자금액이 1천만달러 이상인 사업에 한정하되 5억원까지 용역비의 100분의 20이하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계획된 투자금액이 100분의 10이상의 투자가 실현되었을 때 지급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업확정 후 1년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계약금액 중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건설부문의 기본조사설계비의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5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지구 지정일 현재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33,058㎡ 이상이어야 한다.

②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 외 소재 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2. 도내·외 기업이 지정지구 내에서 공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제16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 지원 등) ① 군수는 조례 제21조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투자촉진지구 안에 부지 매입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일 것
2.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연구소, ICT 기업, 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 이상일 것
3. 투자 사업장에서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이 10명 이상일 것. 다만, 연구소, ICT 기업, 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5명 이상일 것
4.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도내의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에게 입지보조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율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의 범위에서 분양가의 5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는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군수가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및 시설보조금의 지원에 대해서는 제10조부터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도 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이전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 이전가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시설 등록에 따른 사업개시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해당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7조(신·증설 기업 지원)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신·증설기업 지원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이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것
2.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중 지역혁신성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일 것
3. 설비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고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30

명 이상일 것

4. 투자계획 완료 기한이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일 것

5. 별표6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50점(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인 경우36점) 이상일 것. 단, 국내에서 연속한 사업영위 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이내로 하며, 기업 당 30억 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착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제26조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도외 기업의 본점 등 이전보조금)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본점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초과인원 1명당 30만원을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본점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3조에 따라 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본점, 공장, 연구소 중 독립된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1. 제조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또는 지식서비스산업(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제외) 중 어느 하나를 영위할 것 다만, 부동산업(매매, 중개, 임대), 소비성 서비스업 및 건설업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하고, 건설업이 포함된 기업이라도 공장등록증 등 제조업 영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할 수 있다.

2. 국내에서 연속으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3.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다만, 연구소, ICT 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는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5명 이상일 것

4. 기존사업장은 투자계획을 완료하기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관리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1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전략산업 투자기업 지원) ① 조례 제24조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군의 전략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기존의 사업장 부지 및 건물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100실 이상의 호텔업 및 휴양콘도미니엄업
2.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4조제3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성화업종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첨단업종
5. 그 밖에 시설투자 금액이 100억원 이상의 민자사업 또는 연구소·연구개발업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또는 업종

②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입지보조금의 지원은 제9조를 준용하고 시설보조금의 지원은 100억원을 초과하는 시설투자금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시설보조금과 입지보조금은 각각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입지보조금과 시설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입지보조금의 경우 분양계약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시설보조금의 경우 착공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차별 투자계획의 경우에는 공장시설 등록에 의한 사업개시일(증설한 경우에는 시설이 준공된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송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지보조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단, 입주기업의 요청 시 입지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시설보조금으로 대체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특성화업종의 경우 분양가액의 100분의 30 이하로 한다. 이 경우 m^2 당 지원단가는 76,610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1항제4호에 따른 첨단업종 및 제1항제5호에 따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또는 업종의 경우 분양가액의 100분의 25 이하로 한다. 이 경우 m^2 당 지원단가는 63,84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군수는 입지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분양대금이 완납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단, 대송산업단지 준공 이전 입주기업에 한해서는 착공 시 지원금액 결정액 중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분양대금이 완납된 것을 확인한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 ⑥ 제2항 및 제4항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을 군수가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제20조(군내인력 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군내인력 고용보조금은 신규투자로 공장을 신설한 경우로서 공장등록날부터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이 주민등록상 군민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6개월 기간에서 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기업당 10명 이내로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며, 3년 이내에 추가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이전에 지원받을 당시의 상시고용인원을 초과하여야 한다.
-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고용 후 6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1.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50명 이상일 것(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2. 별표 4에 따른 타당성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일 것

- 3. 투자계획 완료 기한이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일 것
- 4.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군내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
- ②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별표 4의2와 같이 하며,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 매입 또는 임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제26조 및 별표 3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정산결과 투자금액과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이 모두 제1항제1호의 지원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 ⑥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기반시설의 지원) 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기반시설 건설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건설비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 대하여는 90퍼센트까지 보조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착공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해당 기반시설의 설계서 및 준공내역
- 2. 투자사업비 내역 및 투자금액에 대한 증빙자료 등

③ 조례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도로
 -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이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일 것
 - 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법」상의 국도·지방도·국가지원 지방도 및 군도 일 것
- 2. 상·하수도시설: 경제자유구역 안의 상·하수도관로와 연결되지 아니하

고 통과하는 상·하수도관로

3. 전기시설: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시설로부터 경제자유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의 도시·군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개별필지”라 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다만, 개발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선로(地中線路)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퍼센트의 비율로 경제자유구역 안의 전기간선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4. 가스공급시설: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 난방용은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개별필지 안에 정압조정실(일정 압력 유지·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5. 지역난방시설: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 입구 차단 밸브까지의 열수송관

6. 통신시설: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 및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별필지 안의 최초 단자까지의 케이블 시설

7. 항만시설: 「항만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본시설과 기능시설

제23조(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에 대한 지원) 조례 제32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4조(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① 군수는 투자기업 유치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의 자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투자기업의 군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와의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부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5조(보조금의 용도의 사용제한)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

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자금을 지원할 때에 국내외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과 입지지원의 경우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보조금의 정산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정산신청서를 투자계획 완료한 후 2개월 이내(다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연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 상황을 다음연도 1월 말까지)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약속한 투자기간 이내에 투자계획 금액을 투자하고 상시고용인원을 고용하여야 하며, 최종 정산서 제출 시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27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영실태 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경영실태 점검결과 지원받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조례 제34조제3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다.

제28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조례 제35조제1항의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지지원 또는 시설지원을 받아 공장시설 등을 등록한 후 제27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 나. 매입한 용지를 처분하는 경우
- 다.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분양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용자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3.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
4.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할 때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어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6.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7.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정산 시의 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8. 용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사업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9. 그 밖에 보조금 또는 용자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 받은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하며, 그 환수 금액 산정은 별표 5를 따른다.

③ 군수는 제26조에 따라 보조금 정산결과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 중 감액 사업량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가목 및 제3호의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보조금이나 용자금 지원계획의 변경 등의 귀책사유가 보조금을 지원받은 해당 기업 외에 있는 경우를 말하며, 제1항제2호의 정당한 사유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의 경우를 말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환수 또는 조기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용자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9조(용자금의 상환) ① 제5조에 따른 용자금의 원금은 5년 거치 3년 균등 배분하여 상환한다.

② 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용자금의 조기상환 명령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

에는 상환원금에 조기상환 사유발생일로부터 취급금융기관의 같은 조건의 기업 대출 평균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부과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기한은 고지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의 용자금 조기상환명령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자금 취급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기업대출 상환의 연체율을 적용하여 연체 이자를 더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부담해야 할 연체이자 또는 기업자금 평균금리는 용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서 부담한다.

⑤ 규칙 제28조제1항제2호, 제1항제3호, 제1항제5호, 제1항제6호, 제1항제8호의 경우 조기상환 사유 발생일은 용자금 지원일로 한다.

제30조(투자유치 성공 포상 등) ① 조례 제36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외국 기업 또는 자본의 유치금액이 건당 5백만달러 이상인 경우
2. 국내 기업 또는 자본의 유치금액이 건당 50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연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최초 투자한 날부터 5년까지만 지급할 수 있으며, 투자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한 경우에 한한다.

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가산점 부여, 희망보직 배치, 특별승급 또는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를 병행할 수 있다.

④ 포상금 지원기준은 별표를 따르며,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기준 등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1조(산업단지 분양전문대행사 보상금) 조례 제37조에 따라 투자유치자문관, 컨설팅업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국내외기업 투자유치를 실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에 의한 금액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수소산업 투자기업 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수소산업의 해당여부를 수소관련 전문가 단체·연구소 등 관계기관에 검토 의뢰할 수 있다.

② 조례 제30조제3항의 투자규모에 따른 보조금 지원한도는 별표 2와 같고, 수소산업 투자기업 지원시 기업이 투자한 토지구입비 인정액은 토지구입비 이외의 투자인정액 합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수소산업 투자시설비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분공장등록 또는 공장등록을 완료한 날부터 1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공고 제 2024 - 553호

화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변경)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화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3월 27일

하 동 군 수

1. 목적 : 화포지구는 남해 대조평균만조위보다 저지대에 위치하며 자연방류가 어려워, 집중하우 시 진교배수펌프장을 통해 남해로 강제배수 중이나 배수용량이 부족하여 내수침수피해 등이 발생함에 따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정비·관리를 통해 자연재해를 사전예방하고자 함.
2. 행정예고 기간 : 2024. 3. 27. ~ 2024. 4. 15.(20일간)
3. 의견제출 기간 : 2024. 3. 27. ~ 2024. 4. 15.(20일간)
4. 공고방법 : 하동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등
5.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같은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

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대상지

지구명	위치	지정개요			지정사유	비고
		유형	등급	면적		
화포지구	하동군면리송원리 일원	침수위험	가	263,846	화포지구는 진교배수장 우수지의 퇴적으로 우수지 용량이 부족하여 내수침수가 발생하며, 화포마을을 관류하는 화포안골소하천과 화포서리소하천은 전구간 제방고가 부족하여 소하천 월류피해가 발생하는 실정	당초
화포지구	하동군면리송원리 일원	침수위험	가	192,541	화포지구는 진교배수장 우수지의 퇴적으로 우수지 용량이 부족하여 내수침수가 발생하며, 화포마을을 관류하는 화포안골소하천은 전구간 제방고가 부족하여 소하천 월류피해가 발생하는 실정	변경

7. 지구지정 후 정비계획

지구명	사업시기	사업예산 (백만원)	사업내용	비고
화포	2023년 ~2027년	13,140	- 소하천 정비 L = 3.07km - 교량 11개소 - 우수지 준설 V = 161,000m ³	당초
화포	2024년 ~2026년	16,705	- 소하천 정비 L = 0.51km - 교량 1개소 - 우수지 준설 V = 20,000m ³ - 배수로 신설 L = 0.30km - 펌프장 신설 Q = 300m ³ /min	변경

8.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하동군청 건설교통과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 및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편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건설과
- 전화 : 055) 880-2513 팩스 : 055) 880-2249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임 : 1. 의견 제출서(서식) 1부.
2. 지형도면 1부.
3. 편입토지 세목조서 1부 . 끝.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1. 행정예고 내용	화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2.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 연락처:
3. 의 견			
4. 기 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변경)지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제 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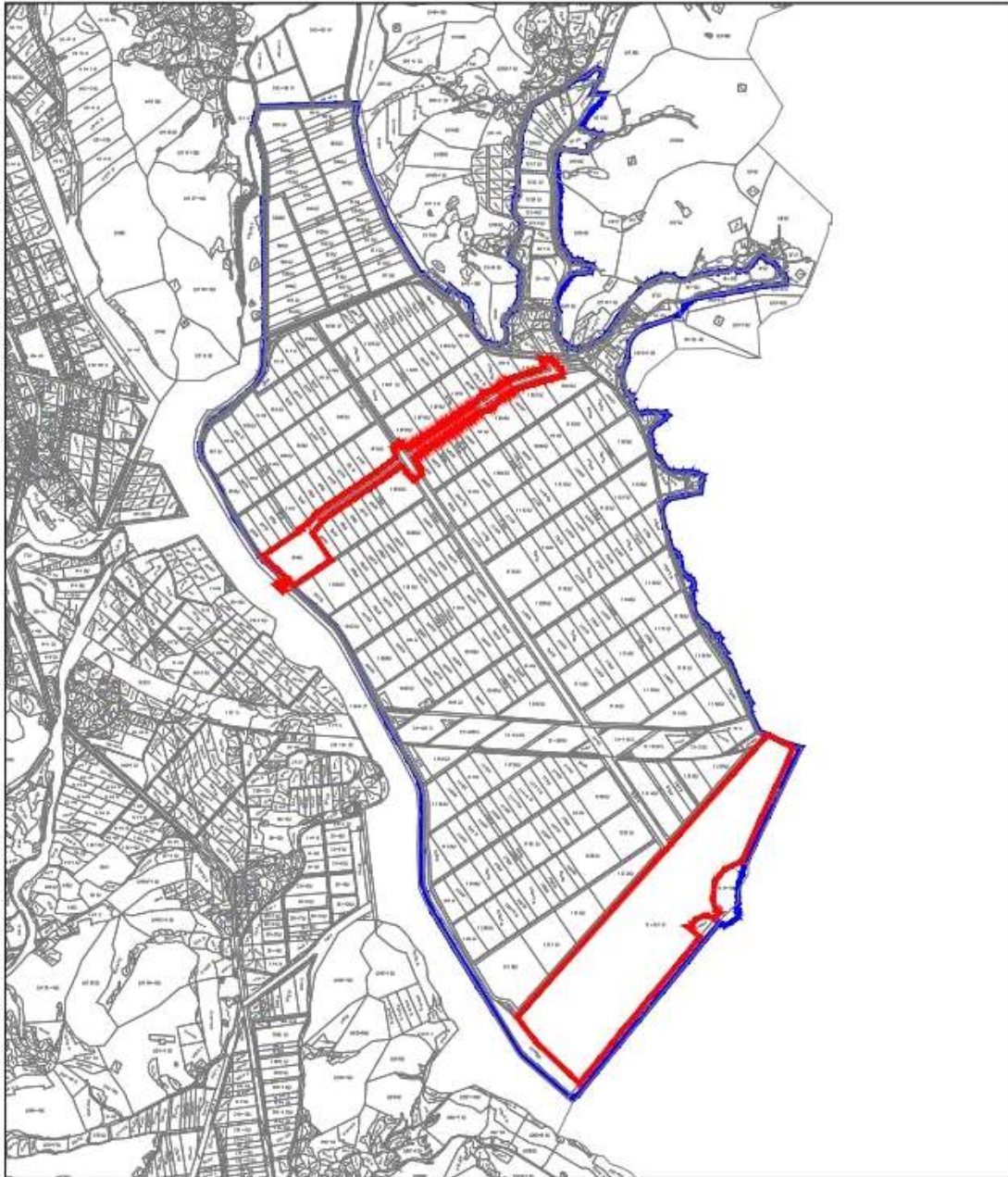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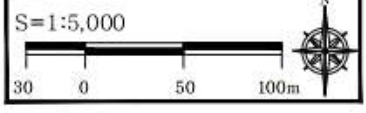
- | | |
|-----|---|
| 비 고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화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지형도면

S=1:5,000



- 범 레 □
- 자연재해위험지구
- 지적선
- 침수예상구역



지정권자 : 경상남도 하동군수
 지정일자 : 2024년 03월 00일
 고시년도 : 2024년 03월 00일
 고시번호 : 고시문 참조
 작성년월일 : 2024년 03월 00일
 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 하동군수

토 지 조 서

번호	위 치	지 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비 고
				대장면적	편입면적		
3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51-551	유	158,838.0	157,458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사유지
4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1235	도	13,723.9	26	하동농지개발조합 하동읍 읍내리 218-13	사유지
5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847-26	제	10,203.0	131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사유지
6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1242	도	2,268.3	15	경상남도	국유지
12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998	답	2,833.9	280	김양권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화포길 30	사유지
13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1226	도	18,089.6	596	하동군	국유지
14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1079	답	3,212.4	438	김수원 66	사유지
15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1079-1	답	3,471.8	361	김수봉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57-11	사유지
18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1231	구	4,505.7	4,10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사유지
19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1081	답	6,228.4	373	이광학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로 103-20 303동 604호 (달천동 달천아이파크2차)	사유지
20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1077	답	3,912.8	392	최선재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공항리 475-3	사유지
21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1082	답	5,889.8	697	김현욱 54	사유지
22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1076	답	1,665.4	165	김문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신촌로 94 101동 304호 (신촌동 디에스아이존빌아파트)	사유지
23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1075	답	4,523.6	441	김양권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화포길 30	사유지
24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1083	답	2,848.6	293	주민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435 107동 2301호(우동 해운대자이아파트)	사유지
25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1084	답	7,259.3	904	박정규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로12번길 13-7 1동 503호(부곡동 부곡협성맨션)	사유지
26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1074	답	4,773.6	469	황희상 119	사유지
27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1073	답	5,668.9	627	황영선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로 53 101동 1304호(명륜동 명륜쌍용예가)	사유지

28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1085	답	4,382.0	447	박정규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로12번길 13-7 1동 503호(부곡동 부곡협성맨션)	사유지
29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1088	답	1,431.1	152	박영준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181번길 92 106동 1402호(월계동 첨단성원아파트)	사유지
30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1087	답	1,406.2	149	황우영규	131	사유지
31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1089	답	2,796.0	295	김현욱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구송로 644-14	사유지
32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1086	답	2,864.4	302	박정규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로12번길 13-7 1동 503호(부곡동 부곡협성맨션)	사유지
33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974	답	7,297.6	746	김용준	20	사유지
34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1090	답	1,296.1	137	이형석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남산로9번길 54-10 502호(팔용동)	사유지
35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975	답	2,986.9	258	빈명신	진교리 15	사유지
36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1091	답	3,155.4	331	김성모	사천시 동동 295-5	사유지
37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1092	답	2,777.6	431	노병영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금성중앙길 227	사유지
38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978	답	3,010.6	259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사유지
39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979	답	2,977.3	259	임연실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595	사유지
40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1000	답	8,589.7	859	강재생	850	사유지
41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51-30	답	1,121.0	264	김양권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134	사유지
42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1080	답	3,094.6	883	조영분	부산 사상구 엄궁동 516-1	사유지
44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1230	구	7,236.4	128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사유지
45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993	답	2,899.1	503	이갑용	진주시 이현동 7-56	사유지
46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989	답	11,864.6	11,854	정진환	605	사유지
25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1225	구	11,309.1	1,483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사유지
26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980	답	3,061.6	267	김기현	하동군 양보면 지례리 142	사유지

27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999	답	1,402.7	138	김양권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화포길 30	사유지
28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982	답	3,043.5	268	신현숙	경상남도 진주시 석갑로 58 312동 603호 (신안동 신안3차주공아파트)	사유지
29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983	답	2,973.8	149	김기현	하동군 양보면 지례리 142	사유지
30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997	답	2,901.8	286	유경주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534	사유지
31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996	답	2,869.9	283	박판순	진교리 173	사유지
32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995	답	2,793.5	275	노항제	진교리 345-1	사유지
33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994	답	2,942.8	304	이순달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로 60 311동 1901호 (삼계동 분성마을3단지 동원로얄듀크)	사유지
34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976	답	3,027.1	263	김임순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302-253 다세대주택 마동 102호	사유지
35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1229	도	19,739.1	555	국(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36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1228	구	13,024.1	1,203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사유지
37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1264	천	221,079.0	114	국		국유지
38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847-8	제	26,359.0	136	하동군		국유지
39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847-13	도	7,181.0	37	하동군		국유지
40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847-19	구	2,407.0	12	하동군		국유지
41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1078	답	2,785.7	354	정희순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명선길 56	사유지
42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1078-1	답	2,975.0	384	김정기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명선길 76	사유지
합 계				662,979.3	192,541			

하동군 공고 제2024-571호

진교 하천재해예방사업 공 시 송 달 공 고(안)

하동군에서 시행하는 『진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손실보상협의 문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04. 01.

하 동 군 수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진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풍수해생활권)정비사업
나. 위 치 :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고룡리 일원
다. 사 업 규 모 : 43,494㎡
라.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보상수탁기관 : 경남개발공사)

2. 공고내용

- 가. 공고 기간 : 2024. 04. 01. ~ 04. 15.(15일간)
나. 공고 장소 : 하동군 지정 게시판 및 홈페이지(<https://www.hadong.go.kr>)
전국 각 시·군·구 게시판, 사업지 관할 면사무소 게시판

3. 보상계획

- 가. 협의기간 : 공시송달완료일로부터 30일간
나. 협의장소 : 경남개발공사 보상사업부(☎055-269-0480)
다. 보상방법 : 현금보상
- 위 협의기간 중 미 체결 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에 따른 손실보상
라.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소유권 이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마.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토지의 경우	가. 인감증명서 2통	나. 주민등록초본 2통(주소 이력 포함)
	다. 통장 및 신분증 사본	라.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인감도장 지참	

4. 기 타

- 가. 보상협의 요청서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나.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서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 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상수탁기관인 경남개발공사 보상사업부(☎055-269-0480)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5. 공고 대상

- 사업명 : 진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풍수해생활권)정비사업
- 소재지 :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고룡리 일원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토지(물건)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1	진교리	127-1	도	1,174	최연석					
2	고룡리	249-2	도	25 (35/6440)	이주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246-11				
3	고룡리	302-1	도	340 (35/6440)	이주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246-11				
4	고룡리	293-3	도	50	박유상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267				
5	고룡리	7-19	답	206	정남식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3-2				
6	고룡리	303-2	도	149	김문기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776				

하동군 공고 제2024 - 603호

- 군민과 함께하는 별천지 하동 - 2024년 하동군 군정혁신 정책제안 공모

군민과 공무원이 참여하는 하동군 미래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효성 높은 정책을 발굴하여 군정 발전에 적극 반영하고자 「2024년 하동군 군정혁신 정책제안 공모」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 4. 4.

하 동 군 수

1. 공 모 명: 2024년 하동군 군정혁신 정책제안 공모

2. 공모내용

○ 공모기간: 2024. 4. 4. ~ 5. 3. (30일간)

○ 응모자격: 하동군정 발전에 관심 있는 누구나(군민, 공무원, 단체 등)

○ 공모주제: 군정 발전 전반의 정책 제안

- 하동군 미래도시 발전방향의 매력도시 실현 방안(우대)
- 출산 장려, 청년·베이비부머 생활인구 유입 등 인구 정책 제안
-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
-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제안
- 문화·축제·관광 활성화 및 하동군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방안 등
- 일하는 방식 개선 및 조직문화 혁신 방안 등

【 제안심사 제외대상 】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
-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을 취득하였거나 직무발명 보상이 확정된 것
- 타 기관에서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단순한 건의사항, 주의환기, 진정, 비판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일반 통념상 적용이 불가능하고 제안에 해당되지 않는 의견과 일반 민원
- 하동군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닌 것

※ 유사 제안과 중복 제안은 먼저 제출된 제안만 우선하여 심사

3. 응모방법: 온라인 / 서면(우편) / 전자메일

※ 공무원은 국민신문고(gov.epeople.go.kr) 접속 > 공무원제안 신청

온라인 접 수	① 하동군 홈페이지(https://www.hadong.go.kr): 군민제안 > 미래하동제작소 > 공모제안
	②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 국민제안 > 일반제안 > 하동군 응모하기 ※ 신청 시 제목에 [2024 하동군 군정혁신 정책제안 공모] 입력 필수, 공모제안서 미첨부 시 공모 참여 불가
	③ 전자메일: pinkmir76@korea.kr
우편 접수	④ (우 5233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본관 2층, 기획예산과 정 책제안 담당자 앞 ※ 우편은 접수 마감일 당일 소인까지 유효

4. 제출서류: 공모제안서 및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1부(붙임서식 참고)

5. 심사 및 발표

○ 심사기준

심사항목	배점	검토사항
실시 가능성	20점	▶군정에 접목하여 실시 가능성 정도 ▶구체성, 완성도, 법령의 제·개정여부, 예산투입 등
창의성	20점	▶정책 내용과 접근방법의 독창성과 참신성 여부
효율성·효과성	30점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지방재정수입 증대, 정책개선 등의 효과 여부 ▶행정목적의 효율적 달성에 대한 기여도 등
적용 범위	15점	▶행정기관의 적용범위(군 전체, 광역, 전국 행정기관) ▶실시 횟수나 빈도, 수혜대상자 수 등
계속성	15점	▶제안의 실시 및 효과의 지속 가능 여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제안의 실효성 여부

○ 결과통보: 2024년 6월 예정(군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지)

6. 시상내역

등급	금상(1명)	은상(2명)	동상(2명)	장려상(3명)
심사점수	95점 이상	90점 이상 95점 미만	80점 이상 90점 미만	70점 이상 80점 미만
시상금 (하동사랑상품권)	100만원	50만원	30만원	20만원

- ※ 시상 인원 등은 제안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 등급에 해당되는 제안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동일인이 여러 건을 제출한 경우 상위 1건에 대해서만 시상합니다.

7. 유의사항

- 응모된 제안은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채택된 제안에 대한 모든 권리는 하동군에 귀속됩니다.
- 중복 응모 제안의 경우,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 심사합니다.
- 심사일정 지연될 경우 결과 발표일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제안내용의 표절, 타 기관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 제출서류 허위 기재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될 경우 수상을 취소하고 시상금은 회수합니다.
- 그 밖의 관련 사항은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을 따릅니다.
- 기타 사항은 하동군 기획예산과 전략기획부서(☎055-880-2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	▪ 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⑦ 조치사항	▪ 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 · 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작 성 요 령 >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 ② 제안종류 : 국민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국민 · 아이디어 · 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국민 · 아이디어 · 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국민 · 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과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 ⑦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제 안 자	기여도 (%)	업 무 분 담 내 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경상남도 하동군은 「2024년 하동군 군정혁신 정책제안 공모」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집 · 이용 목적

경상남도 하동군 「2024년 하동군 군정혁신 정책제안 공모」 참여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등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1년

기타 동의를 거부할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수집 ·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제안 심사 및 결과 안내 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4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인)

하동군수 귀하